

제3채무자진술서

사 건 번 호 : 2019카단823271

제3채무자는 위 사건의 가압류명령과 관련하여 다음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 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음

※ 제3채무자 통보비용 청구(예 아니오)

통보비용 및 포괄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제3 채무자)이 민사집행법 제237조(제291조)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 른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가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금 184,655,118 원(원금)

금 원(위 금원에 대한 ...부터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184,655,118 원

다.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6 ~ 2020.01.19 기간 동안의 인천 출발 코타,다낭 패키지 여행단체의 지상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함)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갑 제1-2호증

금 184,655,118 원(원금)

금 원(위 금원에 대한 ...부터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184,655,118 원

다.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6 ~ 2020.01.19 기간 동안의 인천 출발 코타,다낭 패키지 여행단체의 지상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①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질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②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제3채무자는 이 가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통합도산법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기재하고, 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20.01.23

기타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웍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열람용

갑 제1-2호증